

조세정책 토론회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2015. 10. 30 (금) 09:30~11:3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회의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조세정책 토론회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2015. 10. 30 (금) 09:30~11:3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회의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행사일정

09:30~10:00

개회식

개회사 김준기 | 국회예산정책처장

격려사 정의화 | 국회의장

축사 정희수 | 국회기획재정위원장

10:00~11:15

주제발표

사회 김동건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발제1 2015년 세법개정 주요내용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문창용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발제2 「2015년 세법개정안」 분석

박용주 |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토론 강석훈 | 새누리당 국회의원

홍종학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성명재 | 홍익대학교 교수

김유찬 | 홍익대학교 교수

김우철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11:15~11:30

폐회

■ 목 차

■ 개회사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	7
-------	----------------	---

■ 축사	정희수 국회기획재정위원장	11
------	-----------------	----

■ 발 제

□ 2015년 세법개정 주요내용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17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2015년 세법개정안」 분석	31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 토 론

강석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47
-----------------	----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49
--------------------	----

성명재 홍익대학교 교수	51
----------------	----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	57
----------------	----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73
------------------	----

개 회 사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준기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오늘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비록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셨으나 서면으로나마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정희수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토론을 맡아주신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님,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님,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김동건 교수님과 토론에 참여해 주신 성명재 교수님, 김유찬 교수님, 김우철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님,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조세 정책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여러 의원님, 보좌진, 학계, 관련기관 공무원 및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경제는 내수와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대내외적으로 저성장의 추세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정부문에서는 복지 등 재정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세수여건의 악화로 이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충분한 자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매년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출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경제 및 재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를 통해 2015년도 세법개정안의 정책방향이 대내외 경제환경과 재정여건 변화에 부응하는지 논의하고, 개정내용의 타당성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의원님과 여러 조세정책 분야 전문가들의 해안을 모으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세법개정안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곳에 함께 자리하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처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나라살림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토론자,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10. 30.

국회예산정책처장 김 준 기

축사

정희수

국회기획재정위원장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정희수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 ‘2015년 세법개정안’을 주제로 한 이번 조세정책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정의화 국회의장님, 사회를 맡아주신 김동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오랜 기간 지속된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인해 저성장 추세에 직면해 있으며, 미국의 금리 인상과 신흥국의 경기 둔화 등 대외환경 악화로 인해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소비 심리를 개선시키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정부가 제출한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강화와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와 투자의 증가, 고용 증대가 필수적인 현 상황에서, 경기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고용증대세제’ 및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과 같은 지원책이 마련되어 추진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경기회복을 위해 제시된 다양한 세제개편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이번 토론회를 포함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기적인 경기회복뿐 아니라 경제의 저성장세와 복지지출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세입확충 및 과세 형평성 제고와 비과세·감면 정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의 경제 여건과 중장기적인 조세개편 방향에 비추어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는, 매우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세법 소관 상임위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내에서도 오늘 이루어진 논의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야 의원님들과 여러 전문가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토론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을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10. 30.

국회기획재정위원장
국회의원 **정 희 수**

발 제



발 제 1

2015년 세법개정 주요내용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목 차

I 2015년 세법개정 주요내용

II 참고(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1. 2015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1.1. '15년 세법개정 여건

경제여건

5분기 연속 0%대 저성장세

-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메르스 충격 등으로 소비가 급감 → 5분기 연속 0%대 성장
- 2016년 정년연장 의무화 시행 등 → 향후 3~4년간 청년고용절벽 현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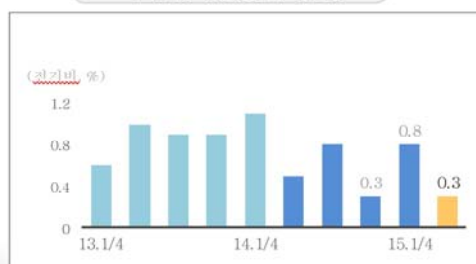
재정여건

최근 3년간 세수실적은 예산을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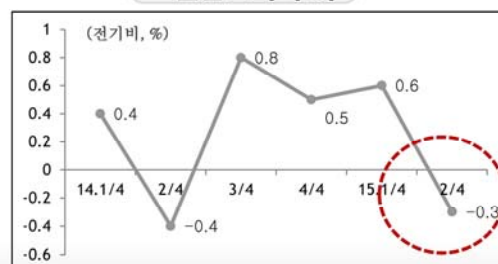
- 예산/실적(조원) : ('12) 205.8 / 203.0 ('13) 210.4 / 201.9 ('14) 216.5 / 205.5

➡ 저성장 탈피와 청년 고용절벽 완화 등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역점

분기별 성장률 추이



민간소비 추이



1.2. '15년 세법개정 기본방향



비전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



기본방향

경제활력 강화

민생 안정

공평 과세

조세제도화
합리화



추진전략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소비여건 개선
- 수출투자 활성화
- 기업구조조정 뒷받침

- 재산형성 주거안정 지원
- 중소 벤처기업 근로자 지원
- 자영업자 농어민 지원 등

- 과세형평성 제고
- 비과세 감면제도 합리화
- 세원 투명성 제고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세부담 수준 합리화 등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5

1.3.1. 경제활력 강화

▶ **미래세대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 **청년고용증대세제** :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 세액공제 신설

- 적용대상 : **모든 기업**(유형주점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적용기한 : **15년부터 적용**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 청년 정규직근로자 증가인원* × 500만원(대기업 250만원)

*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한도

● **기업소득환류세제* 우대**: 청년 임금증가액에 1.5배 가중치 부여

* A 타입 : [당기소득 × 80% - (투자 + 임금증가 + 배당액 등)] × 10%

B 타입 : [당기소득 × 30% - (임금증가 + 배당액 등)] × 10%

- 임금증가액 = **청년상시근로자 근로소득 증가액 × 150% + 그 외 근로자 근로소득 증가액**

●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을 인상** : 50% -> 70%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이연 범위 확대** : 30억원 -> 50억원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6

1.3.1. 경제활력 강화

❖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고, 관광문화 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문화접대비 한도 상향 : 일반접대비한도의 10% → 20%
- 체크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 : 30% → 50%



* '15년 하반기, '16년 상반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본인사용액이 '14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 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
 - * 녹용, 로열젤리(7%), 방향용 화장품(7%),
 - * 일정 소비전력 이상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수상기대용량 가전제품(5%)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기준가격* 상향 : 200만원 → 500만원
 - *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용단, 보석, 귀금속은 기준가격 초과금액의 20% 개별소비세 부과
- 외국인 관광객 소액물품 사전면세 허용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 도입('16.4.1.~'17.3.31. 적용)
 - * 쌍꺼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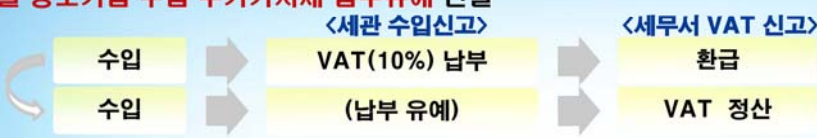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7

1.3.1. 경제활력 강화

❖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수출 중소기업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설


- 해외주식 투자에 대해 비과세하는 펀드 도입



1인당 3천만원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환차익 비과세

〈펀드〉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20~30%) 일몰연장('18년말)
 - * (신성장동력) LED 등 11개분야 65개 기술, (원천기술) 반도체 등 18개 분야 51개 기술
-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연장('18년말)
 - * 소득세 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부분복귀시 3년간 100%, 2년간 50%), 관세 100% 면제(부분복귀시 50%)
- 개인이 특허권 등 벤처기업 현물출자시 세제지원* 신설
 - * '현물출자시 기타소득 과세' or '현물출자 취득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선택 허용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8

1.3.1. 경제활력 강화

❖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여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자발적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① 기업간 주식교환시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및 증권거래세 면제
② 합병으로 인한 중복자산 처분시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③ 모회사가 자회사 채무 인수변제시	→	모회사 : 채무인수변제액 손금산입 자회사 : 채무면제액 과세이연 자회사 주주 : 증여세 비과세
④ 자산양도하여 금융채무 상환자금 충당시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⑤ 주주가 자산 무상 증여시	→	수증법인 : 자산수증액 과세이연 주주 : 증여재산가액 손금산입
⑥ 금융기관이 채무면제시	→	면제법인 : 채무면제액 과세이연 금융기관 :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각종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연장('18년말)**
 ① 재무구조 개선시 자산수증, 채무면제, 자산양도 이익 과세이연 ② 주식 현물출자로 지주회사 설립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③ 조선, 건설 등 5개 특정업종간 합병후 중복자산 처분시 과세이연 등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9

1.3.2. 민생안정

❖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주거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가입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납입한도/의무가입기간>
연간 2천만원 / 5년

<세제혜택>
만기 인출시 발생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 분리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선택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통합 관리 계좌
→ **개인이 직접 구성·운용하는 펀드**

예적금
펀드
기타

●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현행	개정
<소득세 법인세 감면>		
- 일반임대	5년이상 임대 : 20%	4년 30%
- 준공공임대 및 기업형임대	8년이상 임대 : 50%	8년 75%
<장기보유특별공제>		
- 일반임대		
* 매입임대	최대 40%(10년 보유시)	최대 40%(10년 보유시)
* 건설임대	최대 30%(10년 보유시)	최대 40% (10년 보유시)
- 준공공임대 및 기업형임대	8년 50%, 10년 60%	8년 50%, 10년 70%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10

1.3.2. 민생안정

중소 벤처기업 근로자의 일자리를 안정시키겠습니다.

-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10%(대기업 5%)
-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일몰연장: 1인당 200만원('16년말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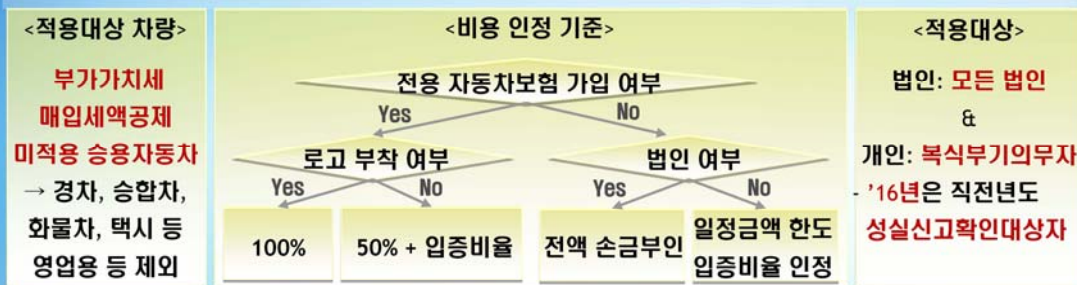


- 협력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 지정기부금단체 포함
 - 동 기금 출연금 →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차감항목에 추가
- 핵심인력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 근로소득세 50% 감면 신설
 - * 핵심인력과 해당 중소기업이 동 기금에 매달 적립금을 각각 납입 → 5년 이상 재직 후 핵심인력이 수령
-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몰연장('18년말)
-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제지원 일몰연장('18년말)

1.3.3. 공평 과세

공평하게 세금을 과세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 * 대주주 기준 지분율/시가총액 : (코스피시장) 2%/50억원 → 1%/25억원 (코스닥시장) 4%/40억원 → 2%/20억원
-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를 단일화 : 중소기업 대주주 10% → 20%

1.3.3. 공평 과세

비과세감면제도를 합리화하겠습니다.

- 시설 투자세액공제 합리화**
 - R&D설비, 에너지절약시설 : 대/중견/중소기업 3%/5%/10% → **1%/3%/6%**
 - 생산성향상시설 : 대/중견/중소기업 3%/5%/7% → **1%/3%/6%**
- 사행산업 당첨금 과세기준 강화** : 경마 등 배팅액 100배 초과 → **100배 또는 200만원 초과**
- 조합출자금 과세특례 합리화** : 배당소득 비과세 → **저율 분리과세('16년 5%, '17년~ 9%)**
- 기타 조세감면제도 합리화**
 - 전자세금계산서 VAT 세액공제 : 일몰종료
 -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 일몰종료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과세면제 : 일몰종료
 - 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 재설계*

* (비우량채권비율) 30% → 40%, (투자한도) 5천만원 → 3천만원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13

1.3.3. 공평 과세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확대 : 철스크랩 추가**
 - * 금지금('08년) → 고급금('09년) → 구리스크랩('14년) → 금스크랩('15년)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 가구소매업, 안경소매업 등 5개 업종 추가**
 -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 발급 → 미발급시 미발급액의 50% 과태료 부과
- 고액 상습채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 채납국세 5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 다국적기업이 제출하는 국제거래정보의 범위 확대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추가 제출**

〈보고서 1(마스터 파일)〉	〈보고서 2(로컬 파일)〉
- 다국적기업의 전체 법적 소유구조 및 자회사 지리적 위치	- 현지법인 사업전략 상세 설명
- 그룹매출 5%에 달하는 상위 5개 재화 서비스 상세내역	- 주요특수관계 설명 및 거래발생 현황
- 중요사업구조 재편거래, 지분취득, 기업매각 등에 관한 설명	- 거래유형별 기업 리스트 및 각 기업별 관계 표시
- 국내 파견된 고소득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 부여**
 - (원천징수) 사용내국법인이 용역대가의 **17% 원천징수**
 - (연말정산) 파견외국법인이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또는 환급신청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14

1.3.4. 조세제도 합리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공제 허용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는 세금계산서 수취기한(제1기)>

구분	현행	개정
기한	6.30일	7.25일(확정신고기한)
- 상속 증여 재산평가 절차 개선
 - 2개 감정기관 감정가액 평균 → 1개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 인정
 - 납세자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요청 가능
- 물납제도 개선
 - 세목 축소 : 양도소득세, 법인세를 제외하고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로 한정
 - 금전납부 판단기준 추가 :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할 것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15

1.3.4. 조세제도 합리화

세부담수준 합리화 등 기타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 당해연도 소득의 80%

구분	20x1	20x2	20x3	20x4	20x5
현행	-20	10	10	10	10
개정	-20	-8	-8	-4	10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보완 : 적용범위 명확화, 개별 예시규정 과세요건 정비
- 특수관계법인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 과세
 - 증여이익 : 수혜법인 3년간 영업이익* × 지배주주의 지분율
 * 3년 후 실제 손익을 반영하여 증여세 재계산

특수관계

지배주주

증여세 과세

특수관계법인

임대료, 수수료

사업기회 제공

수혜법인

매출

용역 제공

고객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16

1.4. 세수효과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연간 +10,892억원

- (증가 요인)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고소득자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제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확대 등
- (감소 요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청년고용 증대세제 신설,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신설 등

(단위 : 억원)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이후
계	10,892	5,561	8,353	△35	△1,547	△1,440
소득세	3,786	2,386	1,211	1,904	△805	△910
법인세	2,398	357	5,292	△1,979	△742	△530
부가가치세	3,135	1,227	1,868	40		
기타	1,573	1,591	△18	0	0	0

세부담 귀착

서민·중산층/중소기업	고소득자/대기업	기타	계
△1,525	10,529	1,888	10,892

2. 참고(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2.1. 중장기 조세정책 여건

경제성장

투자부진 등에 따라 '90년대 이후 성장을 둔화

* 실질성장률(%) : ('90년대) 7.1 → ('00년대) 4.7 → ('10년대) 3.7

- 생산가능인구 감소, 물적자본 증가 둔화 → 잠재성장률도 하락 전망
- * 잠재성장률 전망(GDP 기준, '13 Kf, %) : ('11-'20) 3.6 → ('21-'30) 2.7

인구구조

'90년대 이후 65세 이상 인구비중 지속 증가

* 65세이상 인구 비중(%) : ('90) 5.1 → ('00) 7.2 → ('10) 11.0 → ('14) 12.7

-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14년 73.1%를 정점으로 지속하락 → 인구부양 부담 증가 전망
- * 생산가능인구 비중(% , '11 통계청) : ('10) 72.8 → ('14) 73.1 → ('20) 71.1 → ('30) 63.1

사회보장지출

복지제도 확대에 따라 사회보장지출 급증

* 사회보장지출(GDP대비 %) : ('90) 2.8 → ('00) 4.8 → ('10) 9.0 → ('13) 9.8

- 인구고령화로 복지제도가 현행 유지되더라도 사회보장 지출은 지속 증가 전망
- * 사회보장지출(GDP대비 %, '14 보건사회연구원) : ('20) 12.6 → ('30) 16.7

통일

통일 이후 북한 인프라 구축 등 상당비용 소요 전망

* '90년 통독과정에서 국민부담률 2%p 내외 증가 : ('90) 34.8% → ('92) 36.9%

➡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자연스럽게 세수 증가하는 선순환구조 구축 필요**



19

2.2.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방향

성장 동력 확충

고용친화적 세제구축, 투자창업 활성화

- 일자리 창출 및 투자-고용의 연계 강화, 청년·장애인·비정규직 등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
- 기업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지속

과세영평 제고

소득종류별 과세영평 제고, 적정 세부담 구조 전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소득간 과세영평성 제고
- '소득수준에 따른 적정 세부담' 구조로 전환, 소득탈루 및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 강화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지속추진

- 예비타당성조사, 성과평가 등을 통해 관행적 일몰연장 및 조세지출 신설 지양
- 제도개선 및 세정노력 강화를 통해 자영업자 세원양성화, 역외소득 양성화 등 추진
-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 등 세목별로 다양한 과세기반 확대 추진

조세제도 합리화

금융세제 및 국제조세 합리화, 납세서비스 개선

-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유형별 과세체계를 정비
- 국내외 소득간 과세영평성,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개선
- 조세법령을 쉽게 다시 쓰고, 납세협력비용을 완화하며, 세법개정 효과 분석 강화



20

2.3. 중기 조세부담 전망

국세수입은 연평균 4.3%씩 증가하여 '19년 255.6조원이 될 전망



(단위 : 억원)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연평균
국세수입	215.7	223.1	233.2	244.2	255.6	
(증가율)	(5.0)	(3.4)	(4.5)	(4.7)	(4.7)	(4.3)

중기 조세부담률 : 세수신장성 약화 등으로 18% 내외에서 유지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조세부담률	18.1	18.0	18.0	17.9	17.8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발 제 2

「2015년 세법개정안」 분석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조세정책 토론회

「2015년 세법개정안」 분석

박 용 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Contents

- | | |
|-------------|-----------|
| I 주요 개정안 내용 | IV 소비세 부문 |
| II 소득세 부문 | V 세수효과 |
| III 법인세 부문 | VI 평 가 |



01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I. 주요 개정안 내용

정부가 9월 11일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강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라는 기본방향에 따라 마련됨

- NABO는 세법개정안의 정책·세수효과, 비과세·감면정비 및 세입확충 방안 등을 분석

기본방향	추진전략
경제활력 강화	-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등 - 소비여건 개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기준가격 조정 등 - 수출투자 활성화: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등 - 기업구조조정 뒷받침: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등
민생안정	- 주거안정 재산형성 지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SA) 과세특례 신설 등 - 중소·벤처기업 근로자 지원: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 사회 보험료 세액공제 일몰연장 등 - 자영업자·농어민 지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특례 일몰연장, 농어업용 석유류 등 면세 적용기한 연장 등

01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계속)

I. 주요 개정안 내용

기본방향

추진전략

공평과세

- 과세형평성 제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과세 합리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 비과세 감면제도정비: 일몰항목 88개 가운데 19개 일몰종료, 8개 재설계
- 세원투명성 제고: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

조세제도 합리화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결정·경정 및 세무조사 일원화 등
- 세부담 수준 합리화 등 기타 제도개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 연장,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 보완

05



01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II. 소득세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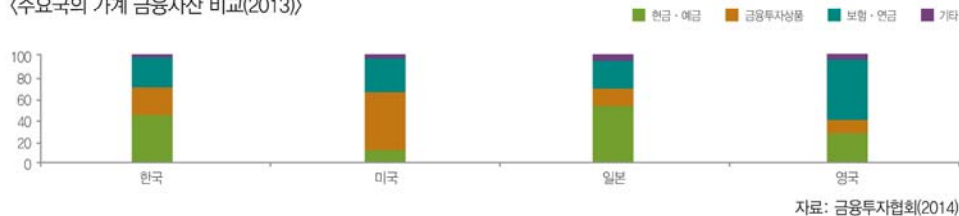
■ (개정안)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가입자가 선택하는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운용한 후 이자·배당소득에 세제혜택을 제공

- 근로·사업소득자가 5년 간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납입 가능
- ISA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200만원 초과분은 9%로 저율 분리과세

■ (분석) 저금리 등 경제 여건 하에서 개인의 저축·투자 유인을 증가시키고 자산형성을 통해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도입 취지는 긍정적

- 가계 내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비중이 낮은 영국('99~) 및 일본('14~)은 이미 ISA를 도입한 점을 참고

〈주요국의 가계 금융자산 비교(2013)〉



07

01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계속)

II. 소득세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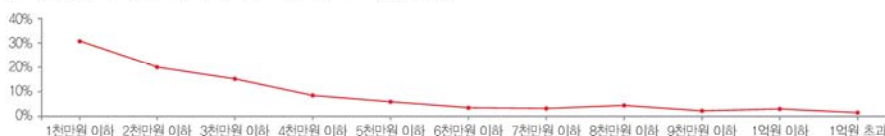
■ 다만, 동 제도의 취지인 신규저축 확대가 제한적일 가능성

- ISA로 인한 세후수익률 증가가 크지 않아 가입수준이 높지 않을 우려
 - 최대납입수준인 월 165만원 5년 간 납입 가정(연 4%, 단리 운용): 발생 소득 대비 연간 약 1.5% 수준 절감
- 차익실현을 위한 기존 금융자산 간 이동이 대부분일 경우 신규저축 확대가 크지 않을 것

■ 제도의 형평성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가입 및 계좌유지를 장려할 방안도 보완할 필요

- 가입한도 제한(연간 2천만원)· 금융소득 종합과세제 제외 등 소득형평성 측면의 고려를 한 점은 긍정적이나, 저소득층의 가입을 제고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재형저축(15년 일몰 예정)의 경우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납입액 1,200만원까지 비과세임에도 연평균 납입금액은 약 240만원 수준에 불과한 점을 참고

〈소득수준별 가처분소득이 마이너스인 가구의 비중(2013)〉



주: 가구 가처분소득=소득-소비지출-비소비지출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4)

08

02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도입

II. 소득세 부문

■ (개정안) 신규 투자하는 해외주식펀드의 경우,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10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환차익(현행 세율 14%)에 대해 비과세

- 도입취지: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외환시장 안정을 유도
- 과거 도입사례(2007.6~2009.12):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제도 폐지
 - 도입 당시 해외주식펀드 규모 증가: 23조원(07.5) → 68조원(07.11)
 - 대미환율이 상승추세로 전환(원/달러): 923(07.6) → 1,043(08.6, 시행후)
 -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개인계좌 639만건의 손실금액이 16조원에 이룸(09.7)

〈대미환율 및 해외주식펀드규모: 2006~2010〉



09

02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도입(계속)

II. 소득세 부문

■ (분석) 최근의 국제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제도를 도입할 유인이 감소

- 미국의 금리인상 예고: 자본유출 우려, 최근 5개월 동안 원화가치 약 5% 하락
-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및 위안화 평가절하: 세계 주식 및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짐(펀드 위험 ↑)
 - 2015년 8월, 중국의 위안화 절하 이후 세계증시의 시가총액이 10일 동안 12% 감소
 - 우리나라 해외주식펀드의 64%(15.6월)가 변동성이 큰 브릭스 지역(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해당
- 대체관계에 있는 국내 주식시장에는 투자감소로 인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 우려

〈대미환율 추이: 2015.1~2015.10〉



10

03 상장주식 금융소득 과세강화

II. 소득세 부문

■ (개정안) 상장주식 과세대상 확대 및 중소기업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 인상

- 유가증권 과세대상 확대: 현행(지분율 2% or 지분액 50억원 이상) → 개정안(1% or 25억원)
코스닥증권: 현행(지분율 4% or 지분액 40억원 이상) → 개정안(2% or 20억원)
※ 시행령 개정사항임
- 중소기업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소득세법): 현행(10%) → 개정안(20%)
※ 대기업 상장주식 세율: 20%(1년 미만 보유시 30%)

■ (분석) 소수의 과세인원, 주주 간 조세형평성, 선진국 사례 등 감안 → 개정안 적절

- 연간 과세건수 3,497건('11~'14년 평균): 상장주식 개인투자자(500만명)의 0.07% 규모
- 중소기업 주주(6억원), 대기업 주주(10억원) 간 평균 양도차익금액 차이 크지 않음
- 해외 선진국: 대부분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 특례세율 적용 사례 없음

11



III

법인세 부문

01 청년고용증대세제

Ⅲ. 법인세 부문

- (개정안) 2015~2017년 동안 정규직 청년고용 증가 시 1인당 대기업 250만원, 중견·중소기업 500만원의 세액공제 추진
 - 청년 고용율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체 고용율과 청년 고용율간의 격차 확대
 - 고용율 격차(전체 - 청년층): '09년 18.1%p → '13년 19.8%p
- (분석)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15.7)의 일환으로 고용효과를 제고하고자 한 것이나, 일시적 보조금 성격의 세제지원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
 - 올해 2%대의 성장세가 예상되는 등 경기 부진 지속과 과거 유사 정책사례 등을 감안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04. 7.~05.12.):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취업자수 증가율 하락(3.1% → 2.6%)
 - “고용증대세액공제”(10. ~11.6.): '11년 경기 둔화로 취업자수 증가율 하락(3.5% → 2.7%)

13

02 업무용 승용차 관련 과세합리화

Ⅲ. 법인세 부문

- (개정안)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및 손금인정 기준”을 도입
 - (도입취지) 업무용 승용차의 과도한 사적(私的) 사용을 방지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
 - (비용기준) 임직원 전용 차량보험 가입, 로고 부착, 차량운행일지에 따른 주행실적에 따라 차등적용
 - 필요경비 및 손금으로 인정되지 못한 업무용 승용차 비용은 개인 또는 이용자의 개인소득으로 처분
- (분석) 업무용 승용차 관련 부당 비용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한 조치로 평가되나, 업무 관련성 및 비용인정 요건 보완 필요
 - 업무 관련성: 차량가액·배기량·업무주행비율 등을 통한 업무 관련성 기준 도입 필요
 - 비용인정요건: 로고부착,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등 형식적·1회성 기준에 따른 제도 실효성 의문
 - 실제 업무주행 실적이 극히 낮아도 비용 인정되는 모순, 로고 등 탈착 주행 유인 존재

14



IV

소비세 부문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01 부가가치세의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확대

IV. 소비세 부문

■ (개정안) 철스크랩 거래에 대해 매입자납부방식으로 전환

- 부가가치세의 매출자납부방식(거래방식)을 악용한 자료상 등의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
- 2008년 금지금거래를 시작으로 금 관련 모든 거래[고금(2009년), 금 스크랩(2015년)]과 재활용폐자원인 동 스크랩(2014년)에 적용·시행 되고 있으며, 이를 철 스크랩까지 확대

■ (분석) 세수탈루 방지를 통한 세원투명성 확보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납세순응부담 등의 고려가 필요

- (납세순응부담의 가중) 매입자납부 적용대상 외의 품목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 별도의 납세협력의무 부담, 별도의 매입자납부제도 전용 계좌설치(1개 지정금융기관) 등
- (어음거래에 따른 문제) 어음할인을 받는 경우 어음대금의 지급지 등이 불명확

02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기준가격, 세율 조정

Ⅳ. 소비세 부문

■ (개정안) 물가상승 및 소득수준 향상, 일부 품목의 사치재 성격 약화 등에 대한 고려와 함께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별소비세율 조정 등 추진

- 녹용·로열젤리, 향수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석·귀금속, 시계 등 일부 과세물품의 기준가격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
-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과세 폐지와 함께 경마장 장외발매소 등의 입장에 따른 개별소비세 세율의 인상을 추진

■ (분석) 보석·귀금속, 시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 상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대용량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폐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2001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음을 고려
- 대용량 가전제품 중 상당수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으로 이미(2013년) 과세 제외대상이었다는 점(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감안

17



01 세수효과

V. 세수효과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3.9조원('16년 0.4조원)으로 전망

- 행정부 전망 향후 5년간 5.7조원('16년 0.6조원)
- (증가요인) 업무용승용차 과세강화(1.9조원),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0.5조원) 등
- (감소요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1.6조원), 해외주식투자펀드 도입(-0.8조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조정(-0.5조원) 등
- 일몰도래 조세지출 정비규모(5년간 2.4조원): 전체 세수효과(3.9조원)의 61.5%
 - 정비액 기준 정비율 12.6%: 전체 감면액(3.8조원) 대비 0.5조원(연간 정비규모) 정비
 - 항목수 기준 정비율 30.7%: 전체 88개 항목 중 27개(19개 폐지, 8개 축소조정) 정비

※ 다만, 올해 일몰도래 예정인 조세지출항목(88개)의 총 규모는 3.8조원으로, 이 중 일몰이 연장되는 항목(69개)으로 인한 세수감소효과(-11.1조원)를 고려할 경우,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3.9조원에서 -7.1조원으로 감소

- 세법개정안에 따라 일몰이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 동안의 감면액 만큼 세수는 감소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비용추계서의 세수효과 추계방식

19

02 세수효과 비교

V. 세수효과

세법개정안에 대한 NABO와 행정부간 5년간 세수효과 차이는 -1.7조원임 : NABO(3.9조원), 행정부(5.7조원)

세법개정안의 향후 5년간 세수효과 비교

(단위: 억원)

	NABO(A)	행정부(B)*	차이(A-B)	비고
합계	39,424	56,578	-17,154	
소득세	14,357	19,966	-5,60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288억원) 해외주식투자펀드(-2,770억원) 등
법인세	20,950	15,002	5,948	-
부가가치세	7,907	13,727	-5,820	철스크랩 납부특례(-3,987억원) 등
기타 세목	-3,789	7,883	-11,672	개별소비세 과세조정(-4,177억원) 등

주: * 행정부가 발표한 전년대비 세목별 세수효과(2015.8)를 이용하여 NABO에서 재구성

20



01 세법개정안 종합평가

VI. 평가

- **(정책 실효성)**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은 현 경제여건상 시의적절하나, 정책의 실효성은 일부 제한될 가능성
 -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해외주식투자펀드 비과세 등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정책효과가 제한될 우려
 - ISA 도입,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등은 형평성 또는 실효성 제고방안 모색 필요
- **(세입확충 미흡)**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미흡 등으로 인해 예년 대비 세수효과는 부진
 - 세법개정안에 따른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총 1조 892억원(행정부 기준)으로 최근 3년간('12~'14년) 세법개정안의 평균 세수효과인 2.2조원의 1/2 수준임
 - 올해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율이 항목수 기준으로 31%(총 88개 항목 중 27개)이나, 감면액 기준은 12.6%(총 3.8조원 중 0.5조원) 수준임

22

01 세법개정안 종합평가(계속)

Ⅵ. 평가

■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 필요) 안정적 자원 확보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 필요

- 행정부 전망 2015~2019년 중 조세부담률 17~18%대는 경제성장률이 높고 복지지출 비중이 낮았던 2000년대 초반의 세부담 수준
- 경제의 저성장세 지속에 따른 세수기반 약화와 복지 재정수요 증대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세부담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마련과 추가적인 세원조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국민적 공감대 조성 필요

▶ 특정 세목 위주의 대안 보다는 효율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세제개편 패키지를 마련할 필요

23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



토론 1

강석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토 론 2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토 론 3

성명재

홍익대학교 교수



201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인적 견해

※ 총평

금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총평을 한다면, 개편의 범위로는 소폭, 개편의 성질로는 조세구조 자체에 대한 구조개혁이라기 보다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fine tuning으로서, 대체로 무난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시장경제 하에서 지속가능한 정책의 첫 번째 조건으로 시장친화적 정책효과를 들 수 있는데, 금번 세제개편안은 전반적으로 시장친화적 개편에 충실한 것으로 평가됨.

다만 작년 개편사항 중 일부 항목(예: 담배 관련세, 기부금 세액공제 등)과 관련하여 보완 작업, 부가가치세의 면세 범위 조정, 그리고 세율조정을 위한 준비작업 등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더욱 좋았을 것으로는 관점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음.

※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세부적 견해

금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꼈던 점 중 가장 인상적인 개편방안은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영역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부정사용 가능성을 축소하고자 한 부분, 소비활성화를 통한 시장활력 개선 등을 위한 개별소비세제 개편방안 등임.

특히 비업무용차량에 대한 비용 인정의 불합리성에 대응한 개편안 등은 조세원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일부 납세자들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교정하기 위한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됨. 일각에서는 비용공제의 상한을 두고자 하는 주장도 있으나, 통상마찰·분쟁의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비차별적 시장접근(non-discriminatory market access)과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의 두 가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인정 한도를 둘 때, 한도 적용을 받게 되는 자동차가 전량 수입품이거나 또는 국내생산품이 적용되더라도 전체 시장점유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비율로 적용된다면, 두 가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실제로 1990년대 초반 해도 차량가격이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취득세율을 2배로 증과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는 당시의 GATT 체제 하에서 불공정 무역 규제의 하나로 지목되어 폐지된 바 있음. 시장 논리를 떠나 초고가자동차는 거의 전량이 수입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WTO 차원에서의 통상마찰 가능성을 고려할 때 가액한도 설정방안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개편 가운데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한시적) 확대 방안의 경우, 소비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방법론 상으로는 적정성에 대해 다소 상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음.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자영업자들에게 대한 소득 파악 및 과표양성화 등의 정책목적을 위해, 조세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이례적이지만, 소기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벌써 상당수 소득자들이 소득 지원·지지를 위한 일종의 소득세 경감방안으로 인식하면서 정책의 취지가 무색해지면서 항구화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임. 일반적인 조세 체계와 달리 비정상적인 측면이 크므로 폐지가 바람직함.

지난 세제개편에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특별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개편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으로서 조세이론상 또는 기능상 세액공제보다는 소득공제방식이 보다 적절하다는 견해를 피력함.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은 일종의 인적자본의 축적·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의 성격을 지니는 만큼 비용공제로 인식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조세이론상 타당하기 때문임. 기부금 공제의 경우, 기부장려 차원의 세제지원방안에 해당되므로 조세이론상 세액공제 방식이 타당하지만, 기부금의 경우 소득탄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기부장려 목적에서는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가 훨씬 효과적임. 세액공제를 전환하게 되면 소득세 내에서는 소득세 증수효과가 일부 있지만, 총체적인 기부금 감소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 소요 증가효과는 소득세 증수효과를 크게 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 전반을 고려하면 부정적 효과가 더 큼. 금년도 기부금이 전년도보다 크게 감소한 것이 우연이라기 보다는 기부금의 소득탄력성이 1을 상회한다는 경제이론에서 이미 예측된 부분임.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기부금을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로 하는 것도 기능상 소득공제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하고 재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임.

2014년 세법개정을 통해 담배 관련세의 세율이 대폭 상승하였음. 그러나 흡연억제를 위해

서는 일시적 세율 인상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지속적·연속적·영속적 세율인상을 통한 지속적인 가격인상이 필수적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가격인상률이 80%에 이르러 초단기적인 충격이 있지만, 추가적인 가격인상안이 없기 때문에 미래의 흡연비용이 높지 않기 때문에 금연효과는 작을 수밖에 없음. 최근 2014년의 담배세 인상안이 비판을 받는 이유는 오히려, 추가적·지속적인 담배세 인상을 통한 가격인상안의 미래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임.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경제발전 단계에 맞춰 조세구조도 변화가 필요함. 우리 경제가 성장하여 선진경제로 편입되어 몸집은 이미 어른이 되었으나, 조세체계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아직 사춘기 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옷이 몸에 찢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우리나라의 특별소비세, 즉 현재의 개별소비세는 수십년전 도입될 당시에는 사치세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였고 또한 성과도 좋았음. 그러나 선진국에 진입한 현 단계에서는, 명분과 실체가 분리되면서 오히려 시장 비친화적인 기능을 나타내고 있음. 담배세, 주류세, 유류세(환경세 및 에너지세 등 포함), 그리고 건강세(일명 비만세 등)의 측면으로 개별소비세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즉, 우리 경제의 몸집과 위상을 생각할 때 사치세는 지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우리 경제 구조상 사치세의 지속과세는 오히려 “규모의 경제” 효과를 저해하여 생산·수출 측면에서의 (-) 효과가, 수요관리 측면에서의 (+) 효과를 압도하여, 총체적으로 실이 득보다 더 클 것이기 때문임.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 축소에 대한 논의가 없어 아쉬움. 초장기적 관점에서 조세정책의 기본 자격 중 하나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세수기반 확보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면세와 낮은 세율이 가장 큰 현안임. 세율인상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우선적으로 면세범위의 대폭적인 축소가 필요한데, 금년도 세제개편안에는 근본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

사업소득세 과표양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현황을 보면, 자영업자들이 사업소득을 탈루하고 있지만, 소득탈루에도 불구하고 실효세 부담은 근로소득자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됨. 이는 암묵적으로 탈세를 전제로 사업소득에 과소한 소득공제 적용하기 때문임. 즉, 소득탈루에 비해 소득공제 수준(면세점)이 지나치게 낮

은 상황임. 이는 소득 탈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사업소득자들이 역차별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1990년대말~최근까지의 과표양성화 정책은 주로 채찍에 의존한 정책이었음. 최근 과표양성화 추세가 둔화된 것은 세부담 역차별로 인해 포화·피로 현상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추가적 과표양성화 위해서는 채찍 외에도 당근(소득공제 점진적 현실화)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과표가 양성화하더라도 세부담의 공평 실현을 위해서는 총소득세수 증가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추정됨. 중장기적으로 근로소득세 실효세부담률의 정상화(즉, 상향조정)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이를 위해서는 공제수준, 세율(과표)구간을 당분간 동결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토 론 4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



I. 전체적인 방향에 대하여

- 정책목표로 경제활성화와 함께 공평과세도 표방하고 있으나 공평과세는 대체로 허울.
-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존의 비과세감면을 연장하면서 또 새로운 비과세감면 도입.
- 이러한 비과세감면제도의 수혜자를 찾아보면 대체로 대기업/자산가 계층.
- 이들 비과세감면제도들의 경제적 효과가 공평과세를 해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번 2015년 세제개편안은 공평성 관점에서 부정적.
- 2015년의 세법개정을 통하여 조세체계의 왜곡은 전반적으로 더 심해지고 있음

II. 세법개정안 개별 분야의 내용

1. 청년취업지원세제: 1인당 500만원 세액공제(대기업 1인당 250만원)

- 이런 식의 임시방편적인 청년취업지원이 의미가 있을까? 기업이 소액의 세액공제 때문에 정규직 인력을 채용하는가?
- 인력채용은 매우 중요한 기업의 의사결정이며 장기적으로 기업에게 큰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라서 소액의 세액공제 때문에 결정을 달리 하지 않음.
- 결과적으로 청년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어차피 채용하려고 했던 기업에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세수감소.
- 동 제도가 영향을 발휘한다면 그것의 반작용은 청년이 아닌 경력직 구직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경제적 의미를 가짐.
- 또 줄여나가야 하는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을 이름을 바꾸어 지속시키는 성격을 가짐.

2.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이연

- 세습자본주의를 더 강화시키는 개정안이며 우리사회의 아킬레스건인 형평성의 문제를 심각하게 훼손.

3. 외국관광객 유인 세제지원: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유인효과가 없고 세수만 감소 → 내국인 역차별을 감행하면서 시도할 경제적 효과가 의심스러움: 10%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면 외국인수요자들에게 10%의 가격 인하효과가 나타나나 이 효과가 10% 이상의 수요증가로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음
- 성형수술의 원가요인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수요증가가 나타나야.
- 성형수술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가격탄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성형수술 수요자는 10%의 가격 차이에 반응하기보다 수술의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
- 또 성형수술차 방문하는 외국인의 경우 관광하지 않고 수술 후 바로 출국하는 것이 일반적. 수술부위의 붓기 등 표시가 나기 때문.

4.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

-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가 올바른 정책방향인가?
- 에너지 정책에 입각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차등화는 바람직
- 특수고가 가전제품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유지를 재고할 필요가 있음.

5. 해외투자활성화를 위하여 해외주식의 매매 및 평가/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제도의 도입

- 자본에 대한 국가정책의 정체성과 일관성이 실종 → 도대체 한국 정부의 자본(외국 자본 및 내국자본)에 대한 정책방향이 무엇인가?
- 외국자본 유치를 위하여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고 있고 법인세율의 경우도 낮추지 않으면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논리로 필요성을 주장.
- 그런데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과세를 허용한다면 자본이 해외로 나가라고 장려한다는 것인데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이 자본이 과다한 상황이라면 먼저 외국자본에 주는 혜택이나 법인세율 정상화 같은 것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그래도 국내에 자본이 과다하면 해외투자활성화 정책을 채택해야.

6. SOC 확충, 설비투자, R&D 비용 등에 대한 세제감면 기한의 연장 등

- 경제적으로 중요한 내용인데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음.
- 개정안에 중요한 내용을 시행령으로 해결하겠다는 단서가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행정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7.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인수기업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다는 규정은 기술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남용의 우려가 큼.

8.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전환 세제지원

- 중소기업이 신사업영역에 진출하는 경우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사업영역 전환(신사업영역진출)이 지원해주어야 하는 합리적 경제적 근거가 되는가?
-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이러저런 비합리적인 명분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우선 오래 동안 자기영역을 지키고 사업을 하는 기업에 비하여 다른 사업영역에 진출하는 기업이 경제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나은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음.

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ISA) 도입

- 민생안정,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명분으로 동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결과적으로 자산가를 위한 제도 → 연간 가입한도 2000만원 이하: 이 정도의 저축을 매년 할 수 있는 소득자는 소득상위 계층.
- 가입기간(최소 5년) 동안 누적되면 자산의 규모가 커짐.
- 소득 200만원 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저율과세 → 현재도 금융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로 14% 저율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형평성을 더 저해하는 역방향으로의 정책.

10.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 임대주택공급활성화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자산가인 임대주택소유자(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지원: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비사업용토지를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하고 개인은 양도세 10% 감면.
- 혜택은 과다하나 과연 이를 통한 임대주택공급활성화 효과가 발생할까?
- 경제학에서 임대주택은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된 재화로 판단: 이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은 공급을 늘리는 경제적 효과가 없고 다만 고스란히 세수감소로 연결.
- 장기적으로는 임대사업자의 공급에 변화 가능: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시장의 경기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을 근거로 임대주택사업에서 물러나려고 한다면 이 경우에도 이를 세제적 수단으로 돌리기 매우 힘들고 세수손실만 커짐 → 이 경우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물량의 감소분 만큼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서 상쇄시켜야.
- 필수재의 성격을 가진 주택은 공급 및 수요의 작은 격차에도 가격변동이 심함 → 정부가 적정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물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시장의 변동성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함.
- 임대주택 공급후 일정기간 후 분양하는 방식을 지양할 필요.

11. 중소기업고용유지를 위한 세제지원, 일자리나누기 지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 중소기업고용유지를 위한 세제지원에서는 중소기업의 고용증가인원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50% 세액공제, 일자리나누기의 경우 감소하는 임금의 절반씩을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각각 공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경우 임금증가액의 10% 세액공제 허용
-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제도로써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 동시에 세제로서 동 지원

책이 가지는 한계를 의식하여야 하는데 많은 중소기업이나 근로자들이 납부세액이 없거나 낮는데 이 경우 동 제도는 유효성이 없음.

12. 음식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

- 현재의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도 이미 높은 수준.
- 동 제도 개정으로 정부는 이 한도를 최대 60% 까지 확대하고자 함.
- 음식점업의 원가 비율에서 식자재구매비용이 절대 60%에 달할 수 없음.
- 부동산정책 실패로 자영업자들에게 제일 큰 어려움은 높은 임대료.
-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에 식자재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여주어서 해결?
- 부가가치세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지원책: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가격의 10%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이 금액이 정부에 들어가지 않고 음식점업자들의 소득보전에 사용되는 결과를 가져옴 →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
- 자영업자가 음식점업 밖에 없나? 형평성의 문제도 야기됨.

13. 성실사업자 요건 완화

- 현재 사업소득자들은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해야 의료비/교육비 등 공제를 소득세에서 받을 수 있음: 이에 비하여 근로소득자들에게 동 공제는 당연스럽게 허용됨.
- 성실사업자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별 경제적 의미가 없음.
- 동 제도는 사업자들을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명백하게 차별하는 정책으로서 이 부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함.
- 의료비/교육비 등의 공제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개인들에게 공제가 허용되도록 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함.

14. 영농상속공제 한도 15억원으로 확대

- 농어업 경쟁력강화 명분으로 영농상속공제 한도 15억원으로 확대

- 이는 지나친 혜택으로서 이제는 돈 많이 버는 농민, 자산가 농민은 농민이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인식과 제도가 바뀌어야 함.

15.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 동 제도의 도입은 바람직한 정책방향
- 그러나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가입하고 기업로고 부착하면 100% 비용을 인정하는 규정은 너무 쉽게 빠져 나가는 구멍을 만들어 주는 것.
- 시행시기를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7년부터 하기로 하고 그리고 추계과세신고자는 제외 → 이 규정을 통하여 제도의 실효성 많이 약화되는데 현재 사업자 중에서 추계과세자의 비중이 크고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자도 추계과세자인 경우 많음.
- 추계과세자에 대한 지나친 우대로서 근거과세와 과세투명성, 과세표준 양성화를 저해하는 주 요인으로 꼽히는 납세자그룹의 확대를 조장하는 역할 수행.
- 업무용 차량의 비용 제한의 방법으로는 비용이 인정되는 차량가격의 상한선을 정하고 동시에 업무 사용비율만큼 인정해주도록 하여야 함 → 세법의 순소득과세원칙, 사실과세의 원칙, 조세평등주의에 합치됨.
- 그러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강요하는 것일 수도 있음.
- 납세협력비용을 낮추어주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50%만 비용 인정
- 납세자가 그 이상으로 업무에 사용하므로 그 이상의 비율로 비용을 인정받고 싶은 경우 본인이 이를 입증하도록 의무 부여: 희망하는 사람은 운행일지 작성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함.

16.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 세제개편안은 대주주범위의 기준을 1%, 25억원으로 낮추어 대주주의 범위를 소폭 확대하고자 하는데 이를 대주주 범위 1%, 10억원으로 더 확대해야 함.
- 그리고 20% 단일세율과세는 지나친 혜택인데 정부안은 이 세율수준을 그대로 유지

- 하고자 함 →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 체계와 왜 달라야 하나?
-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은 반드시 종합과세해야 함 → 그렇게 안할 하등의 경제적 근거가 없음.

17. 종교인소득

- 정부안은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자 함: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기타소득의 개념(일회성 소득, 지속적인 근무처와 무관한 소득 등)과 배치되므로 부적절.
- 종교소득에 허용하려는 필요경비의 비율도 근로소득공제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관대함.
- 그리고 원천징수는 당연히 의무화해야 함.
- 이 모든 사안에서 형평성이 문제시 됨.

18. 역외탈세방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면제요건 강화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금액은 여전히 10억원 이상: 미국은 신고대상이 만 달러 이상 → 우리나라는 미국의 약 100배의 금액에 대하여만 신고의무를 부여.
-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소득이 미국의 100배인가? 아니면 해외소득 세금탈루에 대한 과세당국의 의식이 미국에 비하여 100배 관대한 것인가?

19. 상속증여재산 평가 관련 절차 개선

- 조세제도 합리화를 명분으로 상속증여재산 평가 관련 절차 개선에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1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
- 납세자에게 지나친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
- 우리나라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관행으로 보아 의뢰자의 의도대로 평가액은 낮아지게 되고 동 제도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은 향후 큰 폭으로 감

소할 수 있음.

- 현재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비교해보는 것도 공정과세측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음. - 감정평가비용을 감안한다면 기준을 3억이나 5억 정도로 잡아서 그보다 규모가 작은자산의 경우 1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음.

20. 개인의 비사업용 용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 개인이 보유하는 비사업용 용지는 명백한 투기적 보유로서 이에 대한 부동산정책은 일관성있게 유지될 필요가 있음.
- 과거의 부동산가격의 급등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경제에 큰 어려움을 야기 → 사업자의 높은 임대료비용, 서민들의 높은 주거비용.
- 이러한 투기적 수요로 인하여 부동산가격이 다시 급등하지 않도록 비사업용 용지에 대하여 기존의 정책(장기보유특별공제 불허)은 유지되어야 함.

III. 조세제도의 체계에 대하여

1.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체계의 문제

- 법인세(직접투자에 대한 과세)와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간접투자에 대한 과세)는 자본에 대한 과세이며 근로에 대한 과세와 크게 구별됨.
- 글로벌 경제하에서 개별 국가들의 자본은 국경을 넘어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으로 쉽게 받아들여지는 경향 → 이러한 믿음에 기초하여 법인에 대한 과세를 포함한 자본 및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다른 나라로 자본의 유출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자본소유자보다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한다는 논리가 언론을 장악.
- 위 논리의 전제조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성과 자본의 국제적 움직임에 대한 법인세율이나 다른 자산세율(이자나 배당에 대한 소득세율)의 영향력 → 두 가지 사안

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생각할 필요.

- 많은 연구들이 자본의 이동성에 기초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나 정작 자본의 이동성 자체에 대한 연구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 뚜렷: Feldstein/Horioka의 연구(1980) 등¹⁾

* 국제간의 자본의 이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SRC 지수(savings retention coefficient)를 사용: 국내저축과 국내투자 간의 상관관계.

- 두 번째로 자본의 국제적 움직임에 법인세율이 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 FDI에 대한 법인세율의 영향력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에서 많은 연구들이 조세를 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고 보는 연구들도 또한 많음.
- 이에 비하여 설문조사에 기초한 연구들에서는 거의 대부분 조세는 직접투자의 결정에서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결론.²⁾

추가적인 고려: 1. 국제적인 이중과세방지체계, 2. 현재 국내자본시장상황

- 국제적인 이중과세조정체계에 법인세를 비롯한 자본소득에 대한 개별국가들의 독자적 과세를 가능하게 하는 기제가 존재.
- 법인세 구조와 국제간의 이중과세조정체계는 거주지국과세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 조세조약이나 국내세법에 근거하여 국제간의 이중과세를 대체로 외국세액공제제도를 통하여 해결
- 이 경우 원천지국과세의 영향은 거주지국의 외국세액공제제도로 상쇄되어 결과적으

1) Feldstein/Horioka, Domestic Saving and International Capital Flows, Economic Journal 90, June, 1980.

2) 법인세부담과 투자의 관계에 대하여는 수많은 실증연구가 지금까지 수행되었으나 연구결과에서는 상반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대표적으로 Gordon/Hines(2002)는 세부담이 투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인 안중석(1994)과 이용섭(1999)의 연구에서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한편 서베이연구(기업의 투자결정의 결정에서 법인세부담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하여 투자당사자에 대한 설문조사 답변으로 분석)들에서는 법인세는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가지 조건(시장접근성, 노동력 등) 중에 뒷 순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KPMG(1993)의 연구분석에서는 조세의 유리한 점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내수시장, 금융안정, 노동력 수준 등에 비하여 훨씬 뒷 순위인 12번째에 위치하며 국내의 조사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보여주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999)). 외국의 일부 연구들에서 법인세가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하더라도 이 분석은 이미 오래전 법인세율이 상당히 높았던 시기(주요 국가에서 40% 이상이던)를 포함한 것이어서 현재 20%에 위치한 법인세율 수준에서 같은 유효한 설명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유찬, 법인세는 과연 투자를 저해하는가?, 재정정책논집, 제17집 2호, 2015.

로 어디에 투자하던지 간에 투자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수준은 거주지국의 수준으로 균등화됨.

- 세금부담을 고려하여 투자지를 옮길 이유와 개연성이 없어짐.³⁾

〈표 1〉 외국세액공제제도의 내용

소득의 종류	원천지국 과세	거주지국 과세 (외국세액공제제도)	한미조세조약의 예(%)
배당	제한세율	거주지국의 세율과 제한세율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	15 10(10% 이상 지분소유의 법인간 배당의 경우)
이자	제한세율	상동	12
사용료소득	제한세율	상동	15 10(저작권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재생산 권리의 사용료)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	투자회사 및 지주회사를 제외하고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자료: 자체 작성

- 이 표의 내용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것은 90년대 25% 수준의 원천징수세율을 현재의 14% 수준으로 낮춘 것은 외국자본에 대하여는 하등의 영향이 없다는 것! 단지 국내자본에만 영향을 미침.
- 그리고 한국경제는 외국자본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더 이상 아님 → 국내에서 충분히 축적된 저축자본이 투자되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

예: 최근의 두 차례의 국회토론회

1. 금융자산의 해외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2015년 9월 3일에 열린 국회토론회.
2. 국내금융사 해외진출 활성화, 무엇이 필요한가? 2015년 10월 14일 국회입법조사처.
→ 해외로 자본수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정부와 금융산업이 주도하여 사회여론과 입법기능을 가진 국회에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음.

3) 이러한 연구결과는 해외에도 있지만 국내의 김유찬(1994), 안종석(1994)의 연구에서도 이미 90년대에 제시되었다; 김유찬, 외
국자본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4; 안종석,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제도의 개편방향, 한국조세
연구원, 1994.

- 해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반영하고 있음: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해외주식전용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안 포함 → 신규 투자하는 해외주식펀드의 경우,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10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환차익(현행 세율 14%)에 대해 비과세
- 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중장기 조세제도 보고서에서는 국내자본의 해외투자에 대하여 외국소득면세제도를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음.

배경: 국내경제에서 자본의 초과공급

* 예 1. 국민연금에 누적된 기금이 국내자본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수준.

국민경제 교란/위험요인!!

** 예 2: 기업의 현금성자산 규모: 10대 그룹의 기업(비금융업) 자산구성에서 보면 총자산 1,057.8조원에서 당좌자산의 비중 28.1 % (즉 298조원 수준)⁴⁾

- 또 개인 차원에서는 노후 불안, 기타의 사회안전망 부족으로 인하여 개인들의 저축 동기가 강하며 국민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초과저축 상태!! → 이를 감안하면 이러한 해외자본수출에 대한 지원 요구는 이해되는 측면이 존재함.
- 그러나 조세제도의 체계성 측면에서 볼 때 이는 매우 비효율적인 내용 → 기존의 국내 조세체계(자본에 대한 호혜적 과세)는 국내경제의 자본부족상태, 즉 초과수요를 전제로 짜여진 것으로 해외 자본수출에 대한 정책지원은 이를 수정한 연후에야 가능!!!
- 그렇지 않으면 해외자본유인이라는 정책목표가 사라진 상태에서 자본에 대한 특혜적 과세로 큰 세수손실과 형평성 훼손이 지속되는 것.

4) 한국신용평가(주), Kis-value, 2015.3.24. 추출

2. 소득10분위에서 중상위 소득계층에 조세정책의 일관성 문제: 개인소득세 감면자 비율과 자산형성의 지원

-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국세통계연보의 자료를 보면 2013년 근로소득자 16,359,770명 중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가 11,238,611명, 그리고 과세미달자가 5,121,159명으로서 과세미달자 비중은 31.3% 수준 → 면세점 이하의 납세자 비중은 2014년 소득세공제제도의 개편과 2015년 이에 대한 제도 수정 조치 이후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여짐: 거의 50% 육박.
- 2013년 소득십분위자료(홍종학 의원실 제공 소득백분위자료에서 도출)에서 우리나라 소득8분위와 소득9분위의 경계 소득: 근로소득의 경우 연 3,517만원, 통합소득의 경우 연 4,642만원으로서 모두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과세미달자 포함 총 16,359,770명 근로소득자의 중위소득은 연 1,153만원, 과세미달자 포함 총 19,669,055명 통합소득자의 중위소득은 연 1,975만원.
- 소득 5/6/7분위 근로소득자 및 통합소득자의 경우 매우 낮은 실효세율: 3% 이하 → 거의 면세자에 가까운 수준.
- 분위별 1인당 근로소득금액과 통합소득금액은 9분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10분위에서 크게 증가.
- 9분위와 10분위의 근로자의 경계소득은 연 5,347만원이고 상위 1%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연 2억 209만원으로 급상승.
- 마찬가지로 통합소득자의 경우도 9분위와 10분위의 경계소득이 연 6,731만원이지만 상위 1%의 통합소득은 연 3억 2,597만원으로 급격히 증가.
- 2015년 세법개정안에 제안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기존의 재형저축과 달리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5년간 매년 2000만 원 한도로, 수익 200만 원까지 세금이 없는 것이 특징.
- 200만 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서만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 세율이 적용.
- ISA는 하나의 통합계좌에 예적금, 펀드뿐 아니라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는 만능통장.

- 연간 2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 5년의 의무 가입 기간을 감안하면 ISA에서 최대 1억 원까지 활용 → 이 정도라면 그 수혜층이 소득10분위에서 어느 계층이라는 것은 명백함 - 기존의 재형저축이 소득5/6/7분위의 세부담을 낮추어 주는 역할을 수행했다면 ISA는 소득9/10분위 중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수혜자로 포함됨 → 금융소득종합과세 인원은 2013년 기준 14만명 수준이며 통합소득자는 1970만명 수준!!
- 소득분위별 소득세 관련 방향의 정립이 필요: 면세점 이하의 납세자비율을 줄이려면 소득 4분위 이상의 계층에 혜택을 주는 세제개편은 지양해야 함 → **소득의 상대적 수준이 중요한 기준.**
- 소득4/5/6/7/8분위도 연소득 5000만 이하 이므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더 이상 면세점 비율에 대한 언급을 하면 안됨 → **소득의 절대적 수준을 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시각**
- 어떤 경우라도 소득 9/10분위에 혜택을 주는 세제개편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효율적이지 못함 → ISA!!

IV. 세법개정의 소득계층별 세부담 분석에 대하여

- 정부는 세부담 귀착의 분석에서 이번 2015년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통하여 총 1조 원 정도의 증세효과가 있으며 대부분 고소득자/대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이 분석의 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부의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면 어떤 제도의 세부담 혹은 경감효과의 귀속에서 매우 편파적인 분석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음: 고소득자/자산가/대기업의 혜택과 중저소득근로자/자영업자의 부담을 고소득자/자산가/대기업의 부담과 중저소득근로자/자영업자의 혜택으로 호도하는 경우가 많았음.
- 정부는 세부담귀착 계산에 대한 세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개정되는 개별 제도별로 구분된 세부담 귀착 자료.

-
- 예를 들어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의 도입의 혜택을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로라고 설명
 - 그러나 매년 2000만원의 금융자산을 동 계좌에 가입하여 5년 이상 누적 금액을 동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다면 이는 소득상위계층(8-10분위)의 근로자 → 자산가 계층에 해당함!!
 - 마찬가지로 해외주식전용펀드의 조세혜택도 소득상위계층(8-10분위)의 몫.
 - 이 두 가지 제도의 조세감면 효과는 향후 5년간 약 2.4조 정도로 추정.
 - 이 조세감면 효과를 정부는 어디에 귀속시켰는지? 서민/중산층/중소기업 혹은 고소득자/대기업?
 -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혜택도 정부는 임대주택 수요자에 대한 혜택으로 분류하였을 것으로 보여짐!!
 - 또 정부는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을 한 그룹으로 그리고 고소득자/대기업을 다른 한 그룹으로 분류 하고 있음
 - 중소기업은 어려운 회사가 많으나 중소기업의 소유자들은 부유한 자산가들이 많아서 동 분류에 문제점이 있음.

토 론 5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2015년 세법개정안 검토 의견

1. '15년 세법개정안의 기조와 특징

1) 전반적인 기조

□ 올해 세법개정안의 전반적인 방향은 '경제활성화 기조 하의 소극적 세수확충'으로 압축될 수 있음

- 세수변화의 증가방향으로 보았을 때, 외형적으로는 세수확충을 모색
- 세수증가의 규모가 미미하여 세수확충 의지는 다분히 소극적
- 세목별 세수효과에서 개인소득세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법인세가 가장 적게 늘어난다는 점에서 기업 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
- 세수변화의 연도별 시차효과에서도 주된 세수증가의 시점을 내년('16년)보다는 내후년('17년)으로 늦춤으로써 경제활성화 기조 구성에 힘씀

□ 세수변화의 방향과 규모

- 개정안으로 인해 일단 세수는 연간 1조900억원 순증가(+)
- 세수증가의 양적 규모를 고려할 때, 이는 최소화된 세수확충에 해당
- 1조원 내외의 세수증가는 현재의 국세 규모와 변동성을 볼 때 유의미한 변화라고 거의 느낄 수 없음
- *2015년 국세수입 221조원(예산기준)의 0.5% 이하
- 비과세·감면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의 전반적 세수 효과는 1조900억 원으로 작년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5,680억 원보다 2배 정도 많음

□ 세수변화의 구성

- 세목별 세수효과의 구성을 보면, 전체 세수증가에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5%(3,800억원)로 가장 높음
- 부가가치세의 비중은 중간인 29%(3,135억원)를 기록한 반면, 법인세의 비중은 22%(1,573억원)으로 3대 세목 중에서 가장 낮음
- 이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경제활성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세수를 확충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임

□ 세수변화의 시차

- 세수효과의 연도별 분포를 보면, 개정 후 첫해인 16년에 증가하는 세수(5,561억원)보다 그 다음해인 17년에 증가하는 세수(8,353억원)가 약 1.5배로 더 큼
- 이러한 현상은 법인세목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는 법인세 개정으로 인한 세수효과는 1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전체적인 세부담의 증가도 제한적이지만, 이것이 경기적인 측면에서 주는 단기적인 부작용도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

〈표 2〉 연도별 세수효과(전년대비 기준)

(단위: 억원)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이후
계	10,892	4,789	9,710	△386	△1,687	△1,534
소득세	3,786	2,514	1,083	1,904	△805	△910
법인세	2,398	△618	6,852	△2,330	△882	△624
부가가치세	3,135	1,302	1,793	40		
기타	1,573	1,591	△18			

자료: 기획재정부 2015년 세법개정안 요약자료

□ 종합적으로 볼 때, 세법개정안에 담긴 정책적 지향은 실질적으로는 경제활성화를 우선한 셈

- 연초부터 예상된 세입결손과 추경편성 과정의 논란으로 인해 세수확충은 사실 시급한 정책과제였음(지난해까지 3년 연속 총 20조원대의 세수결손이 지속, 올해도 최소 3조 원이상의 세수결손 예상)
-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은 발표된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보다 더 큰 폭의 세수확충을 예상하고 있었음
- 개정안 발표 이전에 정부가 언급한 세수확충 규모가 1조원대로 최소화된 것은 기업과 가계의 세부담 증가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언론과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대기업 위주의 R&D세액공제를 축소가 포함되지 않은 것도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의식한 것으로 보임
- 보다 직접적으로 정부가 내건 대표적인 2개의 개정안이 각각 청년고용 창출과 금융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경제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상을 감안할 때, 이번 세법개정안은 실질적으로는 경제활성화가 세수확충에 우선시 되었다고도 볼 수 있음

2) 주요 특징

□ 고소득자와 대기업 위주의 세부담:

- 정부발표에 따르면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1,525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이들 계층의 숫자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세부담 인하효과는 체감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반면, 고소득자 및 대기업의 세금증가는 전체적으로 1조5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고소득자가 6,400억원, 기업이 4,100억원을 나누어 부담할 것으로 보임

〈표 3〉 세부담 귀착

(단위: 억원)

서민·중산층 ¹⁾ /중소기업		고소득자/대기업		기타 ²⁾	계
△1,525		10,529		1,888	10,892
서민·중산층	△1,400	고소득자	6,400		
중소기업	△100	대기업	4,100		

1) OECD의 서민·중산층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자: 총급여 5,900만원 이하)

2)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귀착분석이 곤란한 일부 항목

*기재부 발표자료(2015.8)에 근거

□ 증세 vs 증수(세수증가)?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수가 증가하지만, 그 규모와 방식으로 볼 때 증세보다는 세수확대가 더 적절한 표현
- 세수증가 규모가 1조원 정도라 소규모 세수확충에 해당
- 방식도 주로 기존의 비과세 조항이나 올해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의 축소나 폐지 등을 취하고 있음(올해 일몰 도래하는 감면항목 88개 중 27개를 폐지하거나 재설계)
- 따라서 연례적인 조세감면 정비 또는 축소개편에 해당
- 비과세·감면 관련 증가하는 세수는 9,480억원, 감소하는 세수는 497억원

□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고용과 금융 부문 활성화에 세제유인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

- 개정안의 가장 대표적인 항목들은 청년 취업이나 창업, 그리고 중소기업부문 고용을 지원하는 정책
- 경기침체와 노동시장 구조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청년층의 고용 창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신설
- 또한 장기재직자, 정규직 전환, 그리고 일자리 나누기에 대해 세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고용을 촉진

- 다음으로 눈에 띄는 사항은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지원의 제공에 있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 펀드 투자손익 환매시 통산과세 등이 이에 해당
- 세법개정안은 고용과 금융 부문 이외에 소비와 수출,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확대
 - 일부 품목 개별소비세 폐지 및 기준금액 정상화
 - 수출중소기업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설
 - 자발적 사업재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경영애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등에 대한 지원 등
- 세원확충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세법개정 항목들은 대부분 세제 정상화 또는 합리화 차원의 과세강화에 해당
-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 종교소득 과세체계 정비
 -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 연구행정·지원 사무 종사자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제외 등
- 또한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국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납세자 편의나 권익 제고를 위해 추진될 예정

2. 쟁점과 과제

1) 세입확충과 증세논의

- 올해 세법개정안의 역점이 경제활성화에 놓이게 되면서 재정건전성을 보완할 수 있는 세수확대 차원의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
 - 지난 3년간 20조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을 통한 세수확충 규모는 미진하다는 평가
 - 여기에는 아직 부족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업과 가계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판단이 작용
 - 또한 담배세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을 겪은 이후 정부가 또 다시 증세를 거론하기는 매우 어려운 입장
 - 더욱이 내년의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증세카드는 정치적으로 더욱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 결과적으로 정부가 공언한 바 있는 세수확충 노력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미온적인 감면축소로 나타남
- 세법개정안에서 실질적인 세수확대 방안이 빠지면서 국회심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계속된 서민증세 논란으로 인해 본격적인 세수확대 부담은 그나마 여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대기업 부문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음
 - 야당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의 미흡한 재원대책을 공격하며 대기업 부문의 법인세율 인상을 계속해서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보임
- 지난해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6.2%는 일반 대기업의 실효세율 17.3%과 중견기업의 16.5%에 비해 낮은 수준(2013년 기준,

기재부에 따르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전의 대기업 실효세율은 19% 선으로 추정)

- 정부 발표대로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법인세가 연간 2,400억원정도 늘어난다면, 법인세 실효세율은 0.1%p 정도 상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과거 세법개정에 따른 법인세 증가(2013년 1조200억원, 2014년 3060억원)보다 작은 규모
- 일반국민과 야당의 기준으로 이러한 수준의 세부담 인상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기업 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인상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
- 세율인상 대신에 감면축소를 선호하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이러한 논쟁은 결국 대기업의 R&D세액공제율을 인하하는 선에서 타협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올해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정치적 논의와는 별개로,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증세논쟁은 향후에 더욱 심화될 것을 보임

- 적어도 현 정부의 임기 동안에는 세제당국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가능성이 낮음
- 결국 증세논쟁은 총선과 차기 대선을 전후하여 큰 흐름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태임
- 다만 증세가 정치적인 문제로만 다루어지게 되는 경우 경제적 부작용이 클 수 있기에 전문적인 연구기관이나 연구자들의 선제적인 노력을 통해 사회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2) 고용 중심 세제지원

□ 이번 세법개정안에 고용, 특히 청년층이나 비정규직의 고용문제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이 포함된 점은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임

- 청년층의 공식 실업률이 10% 이상이고 취업준비생이나 잠재구직자가 포함된 체감실업률이 23~38% 이른다는 통계청 발표와 같이 청년실업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음

- 2013년 기준 핵심생산인구(30~54세) 실업률 대비 청년(16~29세) 실업자 비율을 보면, OECD 주요국 평균이 2.3인데 반해, 우리나라가 3.51로 가장 높은 상태임
 - 정년연장법이 적용되는 2016년부터는 정년이 55살에서 60살로 5년 연장되어 인건비 부담의 증가를 느끼는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음
- 고용문제의 핵심 키는 민간 기업이 갖고 있는데, 기업들 본인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고용을 늘려나가기란 매우 어려움
- 결국 가능한 방법은 기업의 고용유인을 정책적으로 제고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수단임
 - 세제나 재정 지원을 통해 자신에 필요한 신규인력을 고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드는 것이 핵심
 - 또한 임금수준이나 근로 및 복지 여건의 차이로 인해 취업을 주저하는 청년들에게 추가적인 유인을 제공하여 조기에 취업하게 만들고 안정적으로 근로하게 만드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설비투자 중심의 현행 세제 지원제도를 고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 예를 들어, 대규모 설비투자 위주의 제조업에서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중심으로 세제 지원의 틀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함
 - 서비스 부문은 대규모 설비투자를 기반으로 하지 않기에 현재의 투자세액공제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고, 연구개발비의 비중도 작기에 R&D세액공제 혜택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고용 인력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
- 현재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나 제도의 활용률이 낮고, 실효성이 높지 않아 이를 제고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

- 예를 들어, 정부는 지난해 중소기업 고용관련 조세특례의 규모가 1,05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실제 실적치는 이에 한참 못 미친 402억원에 불과하여 전망치 대비 활용률은 38.1%에 머물렀음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경우 실제로 제공된 감면규모가 정부 전망치 (747억원)의 4.8%(36억원)로 나타난 것은 실효성 낮은 제도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경우 임금수준이 낮아 대부분 면세자나 매우 낮은 소득세를 부담하기에 이들에 대한 감면혜택 제공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조치라 할 수 있음
 - 이번 개정안에 소득세 감면율을 종전의 50%에서 70%로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으나,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시 됨
- 따라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의 형태를 바꿀 필요가 있는데, 청년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이러한 차원의 대안으로 평가될 수 있음
-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평균연봉(약 2500만원)의 25%(500만원)을 정부가 세금에서 지원하는 것에 해당
 - 문제는 중소기업의 채용 의지보다는 청년취업희망자의 의지나 선택에 있기에 지원 대상 중소기업들이 청년입사자들의 급여를 얼마나 올려줄 것인가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임
 - 정부가 2004~2005년 한시적 적용된 고용증대세액공제 효과에 기초해 이번 제도로 연간 3만5000명의 청년 정규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은 최근 노동수요가 비탄력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다소 낙관적으로 보임
 -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적자기업이 많기에 단순한 세액공제 혜택만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임. 따라서 추후 경과를 살펴 특수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라도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이외에 개정안에는 청년 고용증진을 위해 제시된 세제혜택의 종류가 10여개에 이르고 있음

- 이중 사회보험료 공제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고용유지기업 세제지원의 연장은 모두 적절한 조치라 판단
- 또한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신설되는 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 방안도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임
-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보조금과 각종 세제 혜택을 활용하면 청년 채용 인건비의 최대 60% 정도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 향후 관련 제도의 실효성 분석에 기초한 체계적인 제도 정비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3) 금융투자 세제지원

□ 세법개정안의 특징 중 하나는 금융투자 활동을 통한 가계부문의 재산형성을 세 제측면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

-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와 해외주식투자전용 펀드 비과세, 그리고 펀드손익 환매 시 일괄과세 등은 모두 가계부문의 여유자금의 주식시장에 투자되기 용이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짐
- 금리나 부동산 투자수익률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가계보유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주어 자산증식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로 해석 가능
- 동시에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투자문화를 일신하여 침체된 금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 경제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포석으로 보임
- 단, 기존 자산보유 행태에 인위적으로 변화를 주기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유인을 통폐합하는 조치가 갖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
- 예를 들어, 상이한 정책적 목적(취약계층 지원) 하에 주어졌던 세제유인(조합원 예탁금 이자와 출자금 배당에 대한 비과세)을 철회하는 조치의 타당성을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함

□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를 통해 가계가 편리하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여러 상품에 분산된 세제지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한다는 취지는 저금리 상황을 염두에 둔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그 동안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한 현행 재형저축 비과세·소득공제장기펀드 특례는 금년 말로 일몰 종료시키고, 이를 ISA로 대체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임
-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수차례에 걸쳐 빈번하게 바꾸어 온 관행이 이번 세법개정안을 계기로 안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ISA의 신설은 현재의 금융환경에 비추어 적절한 방향으로 생각되나,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 그리고 세제지원 대상에 소득제한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음
- 이 정책의 목적이 금융투자의 활성화에 있다면 대상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처럼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이 목적이라면 지금처럼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소득수준의 제한이 필요할 것임

□ ISA 장점

- 일종의 개인운용 펀드로 투자수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이익 9.9%의 세율 적용 (vs 15.4%)
- 연간 2000만원씩 의무납입기간 5년간 최대 1억원을 납입가능(15~29세 청년층이나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의무가입기간 3년)
- 금융위에 따르면 ISA를 통한 절세효과는 28만~280여만원으로 추정
- 소득에 상관없이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라면 누구든 ISA에 가입(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음)
- 기존 세제 지원 상품의 경우 저소득층과 청년층만 혜택을 보았으나, 이제 중산층도 노후 대비를 위해 활용 가능

□ ISA 한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 절세효과가 크지 않고, 고위험 투

자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얻어야 세금감면액이 늘어나는 구조 (소득이 높지 않은 계층의 활용도 떨어짐)

- ISA 계좌의 순이익을 계산할 때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나오는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제외되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보다 안정적인 예금이나 적금으로 구성될 가능성 있음
- 보험 상품이 편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제한적이며 의무 가입기간이 5년으로 길어 종합적인 자산관리에 한계

□ 결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국민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에 적합도록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금융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서민과 중산층을 정부가 앞장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로 유도하는 것이 적절한가도 고민해야 할 것임
- 비과세 혜택이 적어 많은 금액을 투자해야 9.9%의 저율과세 혜택을 볼 수 있어 서민들의 활용가능성이 낮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
- 개인연금, 퇴직연금, 재형저축, 소장펀드 등에 가입한 서민이나 중산층의 ISA 투자여력이 적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 서민과 중산층의 참여가 저조하여 고소득층과 자산가의 절세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신설하고 납입금 3,000만원까지 평가·환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은 국내외 주식 투자수익 간 세부담 격차를 해소하여 해외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

- 국내주식형 펀드의 매매 평가차익에 과세하지 않는 것처럼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에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
- 이는 국내펀드시장의 해외주식 비중을 높이게 함으로써 글로벌 분산투자의 이점을 통해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환매시 펀드손익 합산 일괄과세 또한 주식 평가차익의 변동성으로 인해 손실을 보는 투자자가 중간에 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금융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4) 개별소비세제 운용방식 전환

-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의 일부 품목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기준금액을 현실화한다는 정부의 개정안은 기본적으로는 적절한 방향으로 판단됨
 - 그러나 정부가 단순히 국내소비 진작의 차원보다는 외부불경제 보정이라는 더 큰 틀에서 개별소비세제 개편에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생각함
 - 소비가 보편화된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로열젤리·향수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폐지했지만, 가구·사진기·시계·가방·보석 등은 사치품이라는 기존의 관념에 얽매어 과세 기준가격만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사치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가 소득재분배 효과를 통해 소비세의 역진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과세취지는 현재와 같이 소비지출 행위가 다변화된 상황에서는 거의 실효성이 없음
 - 따라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재화나 담배 및 술 같은 건강유해 품목 위주로 과세하는 방향의 개별소비세 재편이 바람직함(실제로 이번 개정안에는 사행산업과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 강화가 포함되어 있음)
- 소득수준의 증가로 국내외 시장에 다양한 품목의 고가상품이 등장하고 소비되는 상황에서 과거의 기준으로 분류된 일부 품목만을 사치재로 규정하고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해당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음
 - 훨씬 더 고가인 다른 상품(예를 들어, 의류나 여행상품 등)을 과세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 20% 개별소비세 부과로 인해 과세대상 품목의 거래가 음성화되어 개별소비세 세수만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세수마저 제대로 걷히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됨
-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빠르게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가브랜드의 상품 개발을 막기보다는 더 발전시키는 것이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사치품 명목의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재화의 생산은 현재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과중한 세부담은 이들 기업의 경영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 따라서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 원에서 가구·사진기·시계·가방·보석 등의 소수 재화에 대해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도 이번에 함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5) 공평과세와 세제합리화

□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공평과세나 세제합리화를 통해 세수를 확충하는 다수의 과세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 편법적 손금처리 방지: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 과세전환: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종교소득 과세 도입
- 세부담 수준과 세제 합리화: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사무관리직 직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제외 등

□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 업무용으로 등록된 회사차량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이번 방침은 다소 때늦은 감이 있으나 성실납세 구현 측면에서 엄격히 시행될 필요가 있음
- 일부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moral hazard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이것이 방지되어 온 것은 세정당국의 책임만이 아니라 제도적 미비에도 원인이 있음
- 정부가 개정안에서 비용처리의 조건으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과 운행일지 작성, 로고부착 등의 요건 충족을 요구한 것은 편법적 행위를 줄이는데 일정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생각함

- 다만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도 여전히 사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운행일지의 작성과 검증에 행정적 비용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기에, 추후 실효성을 점검하여 필요한 보완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임
- 앞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승용차 관련 비용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실제로 이번 조치에는 비용인정 한도 연 600만원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에 유의)

□ 참고

- 업무용 차량을 신고한 법인은 전국에 45만 여개, 이들 가운데 화물차와 버스 등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순수 업무용 승용차’만 신고한 법인이 15만~20만 개 정도로 정부는 추산
- 개인사업자 가운데 이 제도가 적용될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2013년 기준 7만여 명에 달함
- 나머지, 소규모 복식부기 작성대상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
-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통해 받는 비용인정 금액은 연간 8조5,000억원(법인 4조2,000억원, 개인사업자 4조3000억원)
- 이들 업무용 승용차 중 상당수가 개인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번 조치로 인해 연간 5,000억 원 이상 추가 세수확보를 기대

□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주주에게도 20%의 세율을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함께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다만, 2013년에도 유사한 개정이 있었으나 불과 2년 뒤에 예고 없이 과세대상을 다시

확대하는 방식의 세법개정은 세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음

- 따라서 정부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과세대상을 확대하기 보다는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를 목표로 한 단계적 확대 방안을 도입시점과 함께 사전에 정해두는 중장기적 접근이 더 바람직함

□ 종교소득 과세

- 기존에 정부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수차례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논의 과정에서 특정 종교단체의 반대로 인해 제대로 법제화되지 못했는데,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해서는 차제에 과세의 정상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1968년 국세청의 종교인 근로소득세 부과시도 무산 이후 47년간 비정상화)
-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상에서 과세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시는 내년으로 미루어진 상태(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80% 필요경비 인정, 실효세율 4.4%)
- 정부가 이번 개정안에서 종교소득을 신설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화 된 필요경비 체계를 적용한 것은 기존의 논의에서 진일보된 방안으로 평가됨
-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국회 심의과정이 또 다시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 건에 대한 조세소위의 논의를 공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단, 종교단체에 의한 원천징수 의무 방식을 자진신고 포함 선택 방식으로 완화한 것은 제도의 실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

□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 2008년 세법개정으로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효과는 실질적으로 올해 이익금부터 반영되어 내년의 세수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음
- 최근 들어 법인세수 실적이 악화되고 있어 국세수입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기업에 한해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소득의 80%에 해당하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설정은 과거 결손금을 공제하는 방식에

만 제약을 가하기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의 세부담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이를 평탄화(smoothing)하는 작용을 하게 됨

- 이 제도는 현재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90%), 독일(60%), 프랑스(50%), 이탈리아(80%) 등에서 시행되고 있음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축소

-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모두 연구개발비에 포함시켜 세액공제액을 산출하는 현행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사무관리직원 인건비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와 관련하여 일정 수 이상의 석박사 연구원 고용을 요구하는 현재 세법상의 연구소 지정 요건은 벤처나 중소기업에게 비현실적인 면이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대기업의 일반적인 R&D 증가율을 고려할 때 당기분 방식에 비해 증가분 방식이 월등히 유리한 방식이기에 증가분 방식의 공제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두 방식 간의 선택적 균형을 회복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세와 지방세 세무조사 일원화

- 2013년 말 통과된 지방소득세 독립화에 따라 지자체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자율적으로 결정·경정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감면분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과세자 주권’을 획득
- 법통과 이후 전국 226개 시군구에서 세무조사를 남발할 경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복 세무조사 금지 차원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과표를 공유하고 과표 산정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함
- 개정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이를 재개정하는 해프닝은 정부 내 정책조율에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하는 것에 해당
- 추후 중요한 세법개정은 부처 간 협의는 물론 공론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임

■ 참고문헌

기재부, 2015년 세법개정안 요약자료 및 내부 자료

통계청, 2015년 고용동향조사

전병목, 기업과세 및 투자지원 제도 합리화 방안, 조세재정연구원, 2015.7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otted lines.

MEMO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designed for writing or drawing. It features horizontal dotted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In the bottom right corner, there is a decorative graphic consisting of a grid of small grey dots that fades out towards the center of the page.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otted lines.

MEMO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handwriting or typing.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ge.



질문용지

효율적인 토론회 진행을 위해, 질문용지를 준비했습니다.
질문 내용은 간략히 논점 중심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작성하신 질문용지는 11:00경 진행요원이 회수하여, 사회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청중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성 명 : _____

소 속 : _____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

